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224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당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대관심의를 비롯한 전당 운영전반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그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 나. 전당의 사용신청, 허가절차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당 운영을 위하여 전당의 시설별 사용료와 사용계약 체결 절차 및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1조 내지 20조).
- 라. 시민의 쾌적하고 즐거운 관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 마.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정함(안 제22조).
- 바. 효율적인 전당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4. 3. 15. ~ 4. 6(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필(2003. 9. 2)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당”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다목적홀,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전당의 사용”이라 함은 전당의 시설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물의 촬영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모든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 등을 위하여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①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전당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전당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및 문화예술분야에 학식이 깊으며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정기대관의 대관심의 및 사용허가시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전당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전당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제) ①시장은 전당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의 할인, 공연정보·전당소식의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전당의 사용자는 회원제의 시행에 따른 모든 규정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④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징수·기간·우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시장은 매년 정기대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시장은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용일정을 조정하여 신청인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하되 다수의 신청자가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 전당에서의 공연실적, 전당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1. 국가·경기도 또는 안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3. 노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⑥시장은 전당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당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⑦전당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 및 행사등에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 및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 및 전당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전당안에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 공연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시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철거에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전당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①정기대관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당일에 사용료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 사용료이외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유료공연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횟수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이 때 1회차 사용료 납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2회차 이후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시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시장은 정기대관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수시대관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사용 개시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 및 사용료 납부 기한을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하며,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시대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액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전액감면 : 국가, 경기도,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등의 행사
 2. 일부감면 : 안산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등의 행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용료 징수의 특례) ①홍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입장수입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이 금액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때 부대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진흥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보증금)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홍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자는 사용료의 납부 및 공연설비의 철거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계약 체결시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산식 : 객석수×입장료 평균금액×10/100×공연횟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때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비 또는 변상금으로 충당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액반환

- 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전당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금액이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을 반환함)
- 나. 공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에 사용 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전당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당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 (입장권의 관리)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며 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입장권의 예매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에 의한 판매금액의 10페센트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 그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입장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미만의 어린이(아동극을 제외한다)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전당의 무대시설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공연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정한 날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당의 대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 ① 시장은 전당에 관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위·수탁에 따른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전당의 재산관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문화체육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이 두 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전당행정관리담당 진 영 인
	담당자 성명·전화	조 차 종 (행정 3612)

〈별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12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오 전	오 후	야 간	철 야
사용시간	10:00~14:00	14:00~18:00	18:00~23:00	23:00~익일 08:00까지 매 3시간당 ※준비 및 철수대관에 한함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해돋이극장	1일	600,000
		오전	150,000
		오후	230,000
		야간	310,000
	달맞이극장	1일	350,000
		오전	100,000
		오후	130,000
		야간	150,000
	별무리극장	1일	200,000
		오전	60,000
		오후	90,000
		야간	120,000
	아외공연장	1일	80,000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50,000
다목적홀	1일	100,000	
국제회의장	1회	100,000	
화랑전시관	1일 평당	1,000	
리허설룸	1시간	5,000	
연습실	1시간	3,000	
소회의실	1시간	1,000	
동아리실	1시간평당	200	
단체악사실	1시간	5,000	
개인악사실	1시간	2,000	
인터넷실	1시간	5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에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사용 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또는 철야작업 시는 각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행사를 위한 대관 시는 기준액에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5.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가산
 -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의 사용료 전액

3.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무대기계	오케스트라 비트	공연 1회	30,000		
	회전 무대	공연 1회	40,000		
	슬라이딩 무대	공연 1회	30,000		
	승강 무대	공연 1회	30,000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공연 1회	40,000	
		중공연장	공연 1회	30,000	
무대장치	덧마루(기본 30평)		1회	100,000	
	댄스 플로어 (고무판)	대공연장	1회	100,000	
		중공연장	1회	80,000	
		소공연장	1회	70,000	
	드라이아이스 머신 (재료 별도)	대당 1회		10,000	
	포그 머신 (재료 별도)	대당 1회		20,000	
피아노	연주용	대당 1회		30,000	
	연습용	대당 1회		1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시간		30,000	
	중공연장	1시간		20,000	
	야외공연장	1시간		30,000	
영상기기	35mm	대당 1회		20,000	
	16mm	대당 1회		10,000	
	빔프로젝트	대당 1회		30,000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통신기기	녹음	· 릴녹음	1시간	30,000
		· 카세트녹음	1시간	10,000
		· DAT녹음	1시간	20,000
		· 비디오녹화	1시간	20,000
	무선 마이크	1회 1채널	25,000	· 마이크 전전자는 전당 제공 · 유선마이크 1개 추가당 5,000원 가산
	유선 마이크(기본 3대)	1회	10,000	
기기	음향콘솔(대공연장)	1회	100,000	
	음향콘솔(중공연장)	1회	50,000	
동시통역시설	· 통역설비 (회의장) · 무선수신기	1회	150,000	· 동시통역시설 1일 2회이상 사용 할 때 1회 초과분에 대하여 기 준액의 50%추가
		1대	2,000	
냉·난방	냉·난방		사용량에 따른 실비	· 냉·난방료를 정수하는 시설은 공연장, 전시장, 국제회의장으 로 함.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영화촬영		1시간 (기본 3대)	45,000	비디오를 포함한다
중계방송	텔레비전	공연 1회 (기본 3대)	200,000	
	라디오	공연 1회	100,000	
의장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24
----------	------

제안년월일 : 2004. 5. 15.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도록하고, 회원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주 요 골자

- “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함.
(안제3조)
- 회원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안제7조)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위원장과”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원제) ①시장은 전당 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회원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3조 (위원회) 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u>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생략)</p> <p>③ 위원장은 전당의 장이 되고 <u>부위원장과</u>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생략)</p> <p><u>제7조(회원제)</u> ① 시장은 전당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의 할인, 공연정보·전당소식의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전당의 사용자는 회원제의 시행에 따른 모든 규정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p> <p>④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징수·기간·우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 (위원회) ①.....</p> <p>.....<u>안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u>.....</p> <p>.....</p> <p>② (원안과 같음)</p> <p>③<u>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하며,</u></p> <p>④ (원안과 같음)</p> <p><u>제7조 (회원제)</u> ① 시장은 전당 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회원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